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. 7. 12 선고 2017가단269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7. 12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
나. 피고 C는 위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

각 2008. 10. 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세중

별지